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285878 판결 [종토 매매대금 분배청구]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박영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덕

피 고 B중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기동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500만 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인데, 피고 종중이 종중 소유의 충남 서산시 C 토지를 2017. 2. 15. D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7,855,110,000원에 매도하고도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는바, 피고에 대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종중이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토지 매각대금 분배에 관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종원들에게 각 500만 원씩 분배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원

별지